

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3.7.부터 (재)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, 2021.7.1.부터 2년의 재계약 기간이 2023.6.30.자로 만료될 예정임
- 나. 청소년 교육·상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 -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, 제8조
 - 추진 필요성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상담, 학업, 직업체험 및 취업,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
 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, 민간조직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-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, 취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
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-1(자유회관 3층)
- 위치도



- 시설규모 : 총 307.56㎡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
- 이용대상 :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등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3.7.1.~2026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: 2,184백만원('23년)

- 인건비 739백만원, 운영비 73백만원, 사업비 1,371백만원, 예비비 1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

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현제영 (☎ 2133-4129)